

7. 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폐지령

재정경제부령 제70호 1999. 3. 18.

폐지이유 및 주요골자

토지초과이득세법(1998. 12. 28, 법률 제5586호) 및 동법시행령(1998. 12. 31, 대통령령 제15972호)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동법시행규칙을 폐지하려는 것임.

토지초과이득세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다른법령의 개정) 국세청과그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4항제1호나목·제5항제2호 및 제6항제2호중 “양도소득세 및 토지초과이득세”를 각각 “양도소득세”로 한다.,

제7조제4항제1호·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8조제4항제7호를 삭제한다.

주택회보